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

-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

The Support Policy Design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ving
for Multicultural Families
- Centered on Chungchungbuk-Do -

김보흠(Kim, Bo Heum)** · 김학실(Kim, Hak Sill)***

ABSTRACT

This paper is a research on the support policy design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ving for multicultural families, which has lately been an issue in Korea.

Despite the rapid emergence of multicultural issues in the Korean society, we haven't properly gone through the close examination of search and preparation as for how the society will change and what we should prepare. Accordingly, it is very important that we come up with systematic policies for multicultural issues that are proceeding even more rapidly than the change in policies. On the national level, the government should help the immigrants on marriage settle down in Korea more easily and take speedy measures as to various problems that may arise in future so as to reduce the social costs as well as costs stemming from the trial and errors.

In this study, we will propose useful policies through substantive analysis design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immigrant women on marriage through systematic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ir nationalities and economic activities as well as how they are adapting to new life in Korea and settling down.

Key words: 다문화가정(Multicultural Families), 결혼이주자(immigrant women on marriage), 삶의 질 (Quality of life)

I. 서론: 배경과 목적

세계화는 노동자의 국제적 이동을 활성화시켰고,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타국에 대한 관심을 일으켜 국제교류와 국제결혼의 비율을 비약적으로 증가시켰다. 그 결과 전통적으로 동질적인 문화를 유지하던 국가들도 다양한 인종, 문화 및 종교의 유입으로 인한 다문화사회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화와 경제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해 이민 송출국에서 점차 국내 거주 외국인 비중이 증가하는 다민족·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즉, 우리 사회는 이주노동자의 대거 유입, 결혼 이주민의

* 본 논문은 "2008 충청북도 여성결혼이민자 실태조사"를 수정한 논문임

** 충청북도의회 행정소방전문위원

*** 충청북도 여성발전센터 연구팀장

대거 유입, 탈북인구의 국내정착 증가, 다국적 기업 및 사업관련 관리계층 및 기술 인력의 유입, 교육부문 외국인 종사자의 증가 등으로 그 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한승준, 2008b: 463-464).

국내적으로 우리사회에서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게 된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와 여성결혼이민자의 증가와 궤를 같이 한다. 결혼이민자는 2002년 34,710명에서 2007년 104,749명으로 불과 5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하였다. 2007년 한국의 혼인신고 건수의 11%가량이 국제결혼이고 농촌 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40%에 달하고 있으며, 출생 자녀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현황은 2007년에 13,445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민족집단들이 하나의 국가 혹은 지역사회에 함께 거주함으로서 형성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라는 용어는 특정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의 억압으로 인하여 실현되지 못한 다양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 혹은 그 차이를 열린 마음으로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감수성 배양 및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력의 전략과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강휘원, 2006; 함정현 외, 2008: 427-428에서 재인용).

한국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는 여성결혼이민자와 이들의 다문화가족,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급격히 증가하였다. 따라서 정부 또한 이들에 대한 정책을 중심으로 다문화정책의 틀을 잡아 나갔다(김원섭, 2008: 112-113).

우리사회에 빠르게 다문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는 다문화 사회에 어떻게 대비하고, 앞으로 우리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에 대한 면밀한 탐색 과정과 준비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정책의 속도가 변화의 속도를 따라 잡을 수 없을 만큼 급속히 진행되는 다문화현상에 대해 우리사회가 보다 체계화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적 입장에서는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보다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보다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우리사회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해 보다 주목하게 된다. 다문화가족 구성유형에 있어 특히 결혼이민자들은 여타 외국인노동자나 유학생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남자와 결혼을 한 여성이며, 자녀를 낳고 양육하며, 영구히 한국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하는 여성들로서 그들은 여성이며, 결혼한, 이민 자라는 특성을 갖게 된다. 국가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하루 빨리 정착과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정착초기부터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국적의 다양성, 한국에서의 적응과 정착, 경제활동 등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와 실태분석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실체적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II. 다문화주의와 결혼이민자 정책

1.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1) 동화주의

동화주의란 이민자들이 주류집단과 동일하게 변해갈 것을 기대하는 일방적 통합정책이다. 따라서 사회내의 잠재적 소수집단이나 이민자들이 국민이라는 다수집단 속에 융해되며, 문화적 적응이라는 단선적 과정의 결과 결국은 다수집단과 분리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이다. 즉, 단일문화주의(monoculturalism)를 의미한다(고숙희, 2008: 218).

동화주의는 한 국가내에 공존하는 주류문화와 비주류문화 중에서 주류문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그 목표로 한다. 즉, 동화주의는 소수인종집단에 속하는 개인이 자신의 언어, 문화, 사회적 특성을 버리고 주류집단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개인적 변화과정을 통해 이주한 국가에 완전히 동화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새로운 국가에서의 권한을 취득함과 동시에 자국민과 같은 존재로 공적으로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며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당연시해야한다. 동화주의를 채택하는 국가들의 경우 이민을 비교적 쉽게 받아들이고 각종 권한을 부여하는 데에도 개방적이다. 다만 이민자들은 출신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을 탈피해 문화적 적응과정을 통해 결국 국가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동화주의를 채택하는 국가의 정책은 문화적 적응과 정체성의 전이가 용이하도록 지원하고 그 속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둔다. 그리고 동화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소수인종에게 고유의 문화를 포기할 것을 강요하지도 않지만, 고유의 문화와 언어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한승준, 2008a: 106-107)..

흔히 동화주의는 새로 이주해 온 이주민이 기존 사회에 일방적으로 도오하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동화과정에서 이주민이 사회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존 사회와 이주민이 모두 새로운 현상에 적응해야 하는 양방향 과정이다(Tuomas Martikainen, 2005: 3). 물론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사회가 그 동화과정의 결과에 좀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Rinus Penninx, 2004; 고숙희, 2008: 219에서 재인용)

동화주의는 기본적으로 문화적 동질화를 추구하며, 이주민집단의 동화를 통한 국가 정체성 확립과 사회통합을 추구한다. 왜냐하면 동화주의에서는 언어, 문화, 종교적 차이로 인한 소수의 정치적 및 경제적 불평등이 자칫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화주의에서는 소수집단이 완전히 주류사회에 흡수됨으로서 인종이나 민족에서 비롯된 갈등이 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동화주의에서 추구하는 평등은 사적 영역에서의 기회의 평등 수준에 그친다. 즉 동화주의는 너무 추상적이고 이상적이어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박단, 2006: 243; 한승준, 2008a: 108에서 재인용).

2)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는 탈근대화주의(Post-Modernism)에 대한 관심과 같이 하여 부상된 개념으로, 1970년대를 전후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정부가 시행하는 새로운 정책이나 국민통합의 이데올로기, 또는 사회운동의 목표를 지칭하는 것으로 존재해 왔다(이용승, 2004). Vertovec(Kymlicka & Norman, 2000)은 다문화주의를 몇 개의 인접한 소수집단의 단위문화가 주류사회와 단위문화를 배경으로 점점이 박혀있는 상태가 아니라,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상호 공존하며 각자의 색깔과 넘새 그리고 고유의 개별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조화되어 또 다른 통합성을 이루어 내는 것으로 정의한다(한승준, 2008a: 102에서 재인용).

Harold Troper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다문화사회라고 할 때, 다문화주의의 개념은 ① 인종, 민족, 문화적으로 다원화된 인구학적 현상 ②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려는 사회적 이념 ③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인종, 민족, 국적에 따른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개인이 공평한 기회에 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 등이 구비된 상황이라고 한다(윤인진, 2007; 고숙희, 2008: 217에서 재인용).

Kymlicka(1995)는 보다 협의의 제도적 차원에서 다문화주의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와 지지가 선결된 조건에서 다양한 문화적 주체들의 특수한 삶의 권리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라고 정의하였다. 반면 Zizek(1997: 44)은 비판적인 관점에서 다문화주의란 다양한 문화의 평화로운 공존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할 자신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별한 공간 속에 다른 문화를 포용하겠다는 관점이며, 이는 일종의 인종차별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다(한승준, 2008a: 102에서 재인용).

따라서 다문화주의에서는 각 인종, 민족의 전통적 문화, 언어, 생활습관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 유지하기 위해 공적원조를 하는 것과 더불어, 인종차별금지,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를 도입하여 각 집단내의 불만의 축적을 예방하고자 하는 정책을 취한다. 그리고 다문화주의는 정치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언어적 불평등을 없애 국민사회와 통합을 유지하려하는 이데올로기이며 구체적인 지도원리이다(조정남, 2007: 14).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다문화주의란 다민족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동화주의의 한계를 인식한 정부 차원에서 새롭게 추진된 다민족정책의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민족이나 인종을 이루는 각 집단은 그 나름의 가치관과 지식의 형성과정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각 집단의 문화를 인정하고 이를 사회가 품을 수 있을 때에 그 사회 역시 번영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관심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과 무관하지 않다. 국제결혼을 통해 이루어지는 다문화가정은 우리와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으로써 문화 간의 격차와 이질성에 의해 무시되거나 차별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의 특징 비교

| 구분 | 동화주의 | 다문화주의 |
|------------|--|---|
| 문화적 지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적 동질성 추구 ○ 추상적인 타문화 이해와 수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적 이질성 존중 ○ 구체적인 타문화 인정과 보호 |
| 국가의 역할 | ○ 매우 제한적 | ○ 매우 적극적 |
| 정책의 목표 | ○ 소수집단의 주류사회로의 동화 | ○ 소수집단의 고유성 인정을 통한 사회통합 |
| 갈등해소방안 | ○ 완전한 동화를 통한 사회갈등 해소 | ○ 완전한 참여를 통한 사회갈등 해소 |
| 정책수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집단 차별방지의 법제화 (적극적 수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집단 문화와 권리 보호의 법제화 (적극적 수단) |
| 다양성 개념 | ○ 사적 영역의 문화적 다양성 보호 | ○ 사적·공적 영역의 문화적 다양성 보호 |
| 평등개념 | ○ 기회의 평등 | ○ 결과의 평등 |
| 이민자에 대한 관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력, 이방인 ○ 통합의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구성원 ○ 사회다양성의 원천 |
| 비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민 동화의 현실적 어려움 ○ 이주민에 대한 현실적인 사회적 배제 | ○ 민족 정체성 약화 및 사회적 분열 초래 |

출처 : 한승준(2008a), *동화주의모델 위기론과 다문화주의 대안론-프랑스의 선택을 중심으로*, 2008년도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3).

우리사회에서 다문화에 대한 논의는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 초창기 다문화에 대한 논의는 주로 이주노동과 관련되어진 하나의 현상으로 인식되었고, 이후 다문화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나타나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논의는 주로 NGO를 중심으로 결혼의 매매婚姻적 성격, 성폭력, 가정폭력, 국적 취득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져 왔다. 이슈제기자로서 NGO의 제안들은 현재 보건복지부의 다문화가족과가 신설되게 한 중요 동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제시되어진 지원방안들은 표면적으로 통합을 지향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의 문화를 기준으로 결혼이민자들의 문화를 동화 또는 융합시킨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최현미, 2008:4).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 관련 정책이 다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하며 조화로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사회는 아직은 결혼이민자들의 재문화화(re-culturalization)를 통한 한국문화로의 동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김이선, 2007: 196).

2. 결혼이민자 정책

1) 우리나라 결혼이민자 정책

다문화가족¹⁾의 한 형태인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은 이주노동자 정책, 국내외 환경

1) 다문화가족의 범주는 일반적으로 결혼이민자가족, 외국인근로자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 1인 외국인 가구로 구성된다. 결혼이민자가족은 한국인남자+외국인여자, 외국인남자+한국인여자로 구성되며, 외국인근로자 가족은 한국에서 결혼 혹은 본국에서 결혼 후 국내로 이주한 가족, 북한이탈주민 가족은 북한태생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인과 결혼 혹은 외국인과 결혼한 가

변화와 궤를 같이 하여 정책이 이루어져 왔다. 우리사회의 결혼이민자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는 농촌총각 문제로부터 저출산·고령화, 노동력 감소, 여성들의 일자리 확대를 통한 대체노동력 확보라는 상황 속에서 거시적 담론을 형성하며 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져 오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에 대한 담론은 농촌의 생산, 재생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것에서 시작되어 현재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과 가족의 위기에 대한 불안감, 노동력 부족 담론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김은실·김정선, 2007: 191).

우리 나라의 다문화정책의 출발점은 1992년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추진 선언 이후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의 개방이후라고 볼 수 있다.

199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대다수는 외국인 노동자로 분류되어 진다. 1990년대 초 산업연수제도라는 이름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입국하였다.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는 영구적 이민제도가 아니라 단기간 고용 후 내보내는 “이주노동자제도”이다. 그러나 영구 정착을 막으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로 남거나 내국인과의 결혼 등을 통해 한국에 정착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즉 경제의 세계화로 인한 자본과 노동인구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초창기 결혼이민자 관련 사업은 2004년 가정폭력 이주여성을 위한 쉼터 2곳이 만들어졌으며 이후 시민단체 간담회를 통한 인신매매성 국제결혼과정과 결혼 이후 가정폭력 등에 대한 인권적 차원의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2005년에는 본격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가 전국을 단위로 실시되었다.

결혼이민자 유입이 던져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06년까지 3단계에 걸친 지원 대책이 마련되었다. 2005년 8월 정부는 제1차로 체류불안 문제해결을 위해 안정적 체류지원, 생활정보 제공, 한국어·한국문화이해교육, 가족관계 증진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기초생활 보장,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지원 등을 시행하였다. 9월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거주(P-2)체류자격을 가진 결혼이민자의 취득요건을 완화하고,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취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제2차 대책은 생활안정대책으로서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적응 지원 체계 구축, 자녀양육지원 등이 핵심내용이다. 제3차 대책은 2006년 『결혼이민자사회통합대책』이 발표되어 참여부처별로 단기간 안에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였고, 결혼이민자 지원 사업에 있어서 좀 더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2007년에는 다문화가족의 통합과 관련된 사업의 시행이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등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2007년 3월부터 9월까지는 사회적 차별 해소 및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등 국가 의료보장서비스

족, 1인외국인 가구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으로 구성된다(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다문화가족 백서, 2007: 19).

를 받을 수 없는 한국국적 취득 전 여성결혼이민자 약 6,00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의 협조를 받아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또한 결혼이민자가족의 체계적인 정착과 지원, 교육을 위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38개 개소되었다. 그밖에 2007년에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들이 마련된 첫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8년에는 2007년까지 산발적으로 추진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이 보건복지부의 다문화가족과가 신설됨으로써 통합적인 계획 하에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특히 5월에는 『다문화가족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계획』이 발표되었고, 6월부터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²⁾이 시행되었다. 9월부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³⁾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2007년 국비 운영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80개소로 확충되었으며, 예산도 223억 원으로 증대되었다.

2) 결혼이민자의 변화 특징

① 외국국적의 다양화

2006년 기준 8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이며, 2007년 말 현재 결혼이민자의 수는 11만여 명으로 2000년 대비 약 4.5배 증가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전국적인 국제결혼의 증가추세에 따라, 결혼 상대국이 중국, 필리핀, 일본,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부터 국적이 다양화되고 있다. 1990년에 50개국에 불과하던 것이 2007년에는 128개국 7만여 명으로 국제결혼의 증가와 더불어 상대국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2000년대 초반 이후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주요 출신국이 필리핀에서 베트남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출신국의 분포 또한 몽골에 이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 국한되던 국제결혼이 아시아를 넘어서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동화주의 모델은 기본적으로 문화적 동질화를 추구하며, 이주민집단의 통화를 통한 국가정체성 확립과 사회통합을 추구한다. 왜냐하면 동화주의에서는 언어, 문화, 종교적 차이로 인한 소수의 정치적 및 경제적 불평등이 자칫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화주의 모델에서는 소수집단이 완전히 주류사회에 흡수됨으로서 인종이나 민족에서 비롯된 갈등이 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동화주의 모델에서 추구하는 평등은 사적 영역에서의 기회의 평등 수준에 그친다. 즉 동화주의 모델은 너무 추상적이고 이상적이어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박단, 2006: 243). 동화주의는 주류문화와 비주류문화의 우열, 주류집단과 소수집단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후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제 도입, 외국현지법령준수, 허위·과장광고 금지, 손해배상 책임, 서면계약서 등 의무규정 및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3) 『다문화가족지원법』은 한국어·사회적응·직업·가족교육 등 교육지원 및 생활정보 제공,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산전·건강관리, 아동의 보육 및 교육지원 등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실태조사 등을 법제화하고 있다.

자는 전자에 흡수된다는 논리를 갖고 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통화주의 모델은 사회의 소수 인종 통합 역량이 약화되고 있다(Zehraoui, 1995: 200-210). 그 외에도 관용을 통한 통화주의 정책은 이주민이 통화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점, 통화되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사회적 분리와 배제로 인해 서로 다른 문화간의 충돌과 사회적 이질감이 증대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림 1> 결혼이민자 연도별 국적별 현황



자료: 통계청, 2008.

국제결혼을 하는 부부 가운데 최근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베트남 여성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베트남 여성 가운데는 18-20세 가량의 여성들이 한국의 남성들과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베트남 여성의 증가는 한국과 문화나 생활양식, 가족 중심적 사고, 유교적 습관, 종교, 얼굴 등 여러 면에서 한국과 비슷하고 특히 베트남 여성들은 순종적이며 출산률도 높고, 참을성도 많아 생활에 잘 적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선호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최현미, 2007: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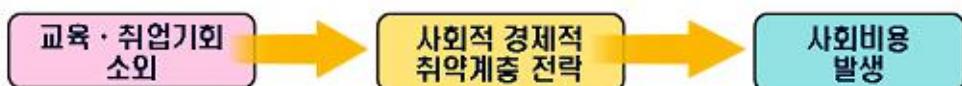
② 자녀 수 증가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결혼을 통해 태어나는 자녀의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을 한 한국 남성의 경우 결혼생활의 안정과 외국인부인의 한국생활정착을 위해 자녀를 빨리 갖기를 원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국제결혼이 증가한 것이 최근의 현상임을 감안할 때 향후 국제결혼을 통한 자녀의 수도 본격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현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13,445명으로 1년 전 7,998명과 비교하여 5,400여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2006년 6,795명에서 11,44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중학생은 924명에서 1,588명으로 고등학생은 279명에서 413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 재학생비

율은 초등학생이 가장 많으며, 현재 만 3~5세 아동의 비율을 감안한다면 초등학생의 증가폭은 상당히 많아질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에서는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를 위한 다문화교육과 자녀들의 정체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양성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림 2> 다문화가족 청소년 현황



● 이민자 2세 등 다양한 언어, 문화 배경을 지닌 인적 자원들이
국내에서 적응을 못하고 해외로 떠날 가능성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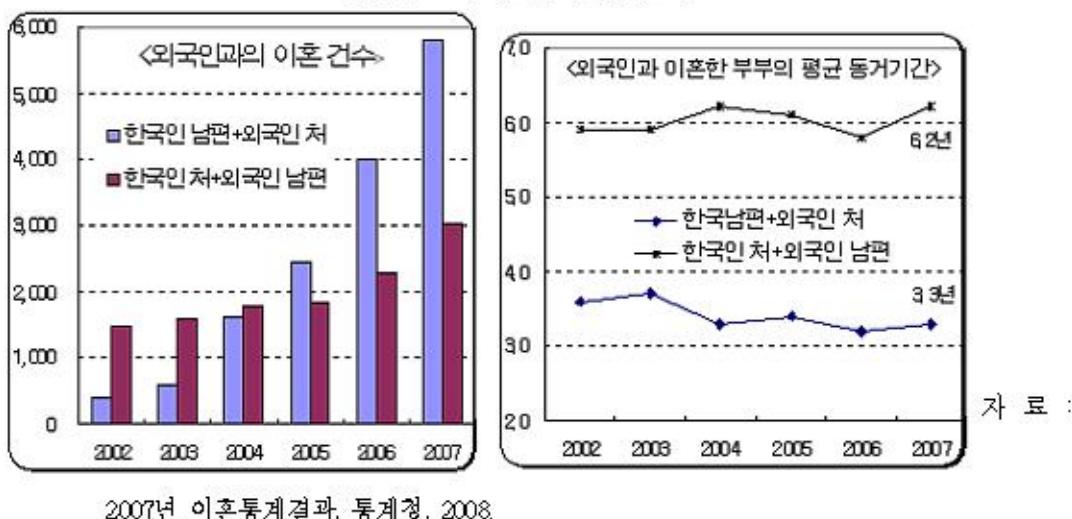


③ 이혼율 증가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한국인과 외국인과의 이혼건수는 8,828건으로 총 이혼건수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와의 이혼은 5,794건으로 전년보다 44.5%증가한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인 처와 외국인 남편과의 이혼은 3,034건으로 전년보다 3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결혼으로 인한 혼인누적건수가 높은 국가를 살펴보면 중국 99,297건, 베트남 27,134건(2000~2007)으로 나타났다. 2007년 한국 남편과 외국인 처의 이혼 중 동거기간이 4년 이하인 부부가 90.2%이며 평균 동거기간이 3.3년이고, 한국 남편과 외국인 처의 이혼 중 자녀가 없는 부부가 91.8%로 나타났다. 외국 남편과 한국인 처의 이혼 중 4년 이하인 부부는 60.3%이며, 평균동거 기간은 6.2년이고, 한국인 처와 외국인 남편과의 이혼 중 자녀가 없는 부부가 84.8%에 이른다.

<그림 3> 외국인과의 이혼건수



III. 충청북도 결혼이민자 실태 분석

본 연구는 충청북도 12개 시·군에 실제로 거주하는 모든 결혼이민자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전조사를 거쳐 여성결혼이민자의 주소 및 국적등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12개 시군에 여성결혼이민자 실태조사를 위해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하였다. 회수 결과 총 3,910건 중 2,522건을 회수하여 65%의 회수율을 보였다. 다만 회수되지 않은 설문의 경우 조사거부와 가출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가족 간의 갈등이나 가부장적 위계질서 속에서 여성들의 의사표시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서 다뤄야 할 부분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충청북도의 결혼이민자 국적 분포

1) 지역별 여성결혼이민자 규모

지역별 여성결혼이민자의 규모를 통해서 도내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주로 살고 있는 지역을 알아보았다. 특히 도시와 도농복합도시,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청주시 616(25.0%), 충주시 333(13.5%), 청원군 245(9.9%)의 거주비율을 보이고 있다. 충북지역에 있어서는 청주시와 충주시, 제천시 등 도시와 도농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지역에 여성결혼이민자의 거주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청원군, 충주시, 제천시 등의 거주비율을 살펴보면 충청북도 내 여성결혼이민자의 55%정도가 도시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청원군은 군 단위 지역으로 농촌으로 분류가 가능하며, 충주시와 제천시는 동과 면이 지역 내에 동시에 존재함으로써 복합 도시적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의 이러한 성격을 감안한다고 하여도 충청북도 내 여성결혼이민자는 상당수 도시적 성격을 지닌 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여성결혼이민자의 거주지역

(단위 : 건, %)

| | 시군별 | 빈도 | 백분율 |
|------|-----|-------|-------|
| 도시 | 청주시 | 616 | 24.4 |
| | 충주시 | 354 | 14.0 |
| | 제천시 | 180 | 7.1 |
| | 청원군 | 245 | 9.7 |
| | 보은군 | 138 | 5.5 |
| | 영동군 | 143 | 5.7 |
| | 진천군 | 174 | 6.9 |
| | 옥천군 | 190 | 7.5 |
| | 괴산군 | 100 | 4.0 |
| | 증평군 | 73 | 2.9 |
| 농촌지역 | 음성군 | 200 | 7.9 |
| | 단양군 | 109 | 4.3 |
| | 합 계 | 2,522 | 100.0 |

2) 여성결혼이민자 국적

설문응답자 중 가장 높은 국적 분포를 가진 국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중국(조선족 포함) 1,017(40.3%), 베트남 721(28.6%), 필리핀 271(10.7%), 일본 224(8.9%)의 순서로 구성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몽골, 타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미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키르키즈스탄, 인도네시아, 인도, 세르비아여성들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도내 남성과 결혼을 하여 정착하고 있다.

도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국적분포를 통해 결혼이민현상이 비단 동남아 뿐 아니라 동유럽 등 국적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무응답자를 제외한 도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지역별 실태를 살펴보았다. 중국출신의 아내가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청주시(60.1%), 충주시(47.8%), 제천시(40.6%), 청원군(29.3%), 진천군(49.1%), 증평군(39.7%), 음성군(41.6%)이다. 반면 베트남 출신의 아내가 가장 많은 지역은 보은군(51.5%), 영동군(33.1%), 옥천군(61.6%), 단양군(60.6%)으로 나타났다. 다만 괴산군은 필리핀(33.0%)여성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근에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단양군을 제외하면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의 경우는 충북의 남부지역에 위치한 인접지역으로 베트남 여성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 특이할 만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 여성결혼이민자의 국적

(단위: 명, %)

| | 중국 | 베트남 | 일본 | 필리핀 | 몽골 | 태국 | 캄보디아 | 우즈베키스탄 | 기타 | 무응답 | 합계 |
|-----|-------|------|-----|------|-----|-----|------|--------|-----|-----|-------|
| 빈 도 | 1,017 | 721 | 224 | 271 | 79 | 72 | 51 | 23 | 32 | 32 | 2,522 |
| 백분율 | 40.3 | 28.6 | 8.9 | 10.7 | 3.1 | 2.9 | 2.0 | 0.9 | 1.3 | 1.3 | 100 |

2. 지역사회 적응 및 정착 실태

1) 한국생활 적응에 가장 어려운 점

도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을 중복응답으로 알아보았다.

<표 4> 한국생활 적응에 가장 어려운 점

(단위: 명, %)

| 한국생활 적응에 어려운 점 | 빈도 | 백분율 |
|----------------|-------|-------|
| 언어문제 | 1,258 | 29.8 |
| 경제적 어려움 | 585 | 13.9 |
|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 523 | 12.4 |
| 취업관련 | 396 | 9.4 |
| 체류연장 및 국적취득 | 297 | 7.0 |
| 남편 및 시댁과의 관계 | 256 | 6.1 |
| 자녀 양육 문제 | 463 | 11.0 |
| 외로움 | 332 | 7.9 |
| 기타 | 112 | 2.7 |
| 합계 | 4,222 | 100.0 |

빈도별로 보면 언어문제 1,258(30%), 경제적 어려움 585(14%),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523(12%), 자녀 양육 문제 463명(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언어문제는 단시간 내에 해결되지 않는 성격을 지녔으며, 다른 문제보다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남으로써 여전히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언어로 인한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생활적응에 있어 언어문제를 제외하고는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취업을 한 경우가 상당수라는 점에서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체류연장과 국적취득과 같은 사회적 요인 등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생활 가운데 겪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편 및 시댁과의 관계, 자녀양육문제, 외로움 등 개인적, 가족적 요인에 의한 어려움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생활적응을 알아보기 위해 의사소통 수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신의 한국어 수준에 대해 말하기(3.37), 읽기(3.39), 쓰기(3.21)로 나타나 읽기보다는 말하기, 말하기 보다는 쓰기를 어려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 한국어 수준

(단위: 명, 점, %)

| 한국어 수준 | 말하기 | 읽기 | 쓰기 |
|-----------|--------------|--------------|--------------|
| 매우 잘함 | 475(18.8) | 453(18.0) | 396(15.7) |
| 잘함 | 542(21.5) | 519(20.6) | 425(16.9) |
| 보통 | 960(38.1) | 884(35.1) | 863(34.2) |
| 못함 | 337(13.4) | 341(13.5) | 461(18.3) |
| 아주 못함 | 117(4.6) | 234(9.3) | 135(5.4) |
| 무응답 | 91(3.6) | 234(9.3) | 242(9.6) |
| 한국어 수준 평균 | 3.37 | 3.39 | 3.21 |
| 합계 | 2,522(100.0) | 2,522(100.0) | 2,522(100.0) |

거주기간에 따라서는 한국어 수준이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국적취득자의 경우 한국어 수준이 매우 잘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반면, 국적 미취득자의 경우 한국어 수준을 보통이라고 응답한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어, 거주기간과 한국어 수준과는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 한국어교육 불참 이유

한국어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 불참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빈도별로 살펴보면 시간이 없어서 306(33.4%), 어디서 하는지 몰라서 274(29.9%), 거리가 멀어서 162(17.6%),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서 149(16.2%)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없어서는 집안일이나 자녀 양육으로 인해 교육에 참여할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어디서 하는지 몰라서라고 응답한 경우는 교육 장소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참여가 어려운 경우 한국어 교육이나 자녀교육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와 같은 방문 학습 및 교육 시간의 차별화, 장소의 다양화 등 교육 참여 방법의 개선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경우는 영아의 경우 센터내에 보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나, 유아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돌아올 경우 맡길 곳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표 6>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단위: 명, %)

| 구분 | 빈도 | 백분율 |
|---------------|-----|------|
| 어디서 하는지 몰라서 | 274 | 29.9 |
|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서 | 149 | 16.2 |
| 거리가 멀어서 | 162 | 17.6 |
| 가족의 반대 | 25 | 2.7 |
| 시간이 없어서 | 306 | 33.4 |
| 합계 | 916 | 100 |

* 무응답은 missing data로 처리하였음

4) 한국생활 적응에 가장 필요한 교육

도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초기에 한국생활에 적응하고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 중복응답으로 알아보았다. 한국어 교육 1,281(28%), 한국문화이해 및 한국음식교육 1,057(23%), 자녀양육 및 지도 968(19%), 직업기술 및 취업교육 659(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결혼이민자여성은 한국생활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가정생활을 위해 한국문화 및 한국음식, 자녀양육에 관한 교육뿐 아니라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인 직업기술 및 취업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교육

(단위: 명, %)

| 필요 교육 | 빈도 | 백분율 |
|-----------------|-------|-------|
| 한국어 교육 | 1,281 | 28.2 |
| 한국문화이해 및 한국음식교육 | 1,057 | 23.3 |
| 자녀양육 및 지도 | 868 | 19.1 |
| 직업기술 및 취업교육 | 659 | 14.5 |
| 부부관계 즐진 교육 | 302 | 6.7 |
| 취미 및 여가선용 교육 | 271 | 6.0 |
| 기타 | 100 | 2.2 |
| 합계 | 4,538 | 100.0 |

3. 경제활동 분석

1) 여성결혼이민자의 직업

여성결혼이민자의 본국에서의 경제활동과 직업 그리고 한국에서의 경제활동과 직업을 통하여 결혼 전·후의 직업유무와 직종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본국에서의 직업을 빈도별로 살펴보면 경제활동에 종사하였던 경우 공장근로자 425(16.9%), 사무직 352(14.0%), 농축산업 241(9.6%)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경제활동의 경우 미취업 204(8.1%), 전업주부 150(5.9%)에 해당하고 있다. 본국에서의 직업 가운데 기타응답은 약사, 미용, 간호사, 공무원 등이었다고 답하였다. 본국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비경제활동보다 경제활동에 종사했던 비율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혼 후 직종의 변화를 살펴보면 경제활동(30.1%)이 비경제활동(69.9%)인구로 전환된 것을 알 수 있다.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전업주부가 1,060(42.0%)에 해당함으로써 결혼과 동시에 전업주부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활동 중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 직종으로는 사무직으로 결혼 후 한국에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는 불과 26(1.0%)이며, 결혼 전과 비교할 때 13%가 감소한 수치이다. 여성결혼이민자가 결혼 후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농·축산업이 277(11.0%)의 경우에 해당함으로써 취업직종의 변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의 기타응답의 경우는 시간강사, 과외강사 등으로 응답하였다.

결과적으로 미취업의 경우 249(9.9%)와 기타, 학생, 무응답, 전업주부 42.0%의 비율을 합치면 비경제활동 인구가 69.9%에 이르고 있다. 이는 결혼 후 한국에서 직업을 갖고 있는 전국 평균 60%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경우로 도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과 구직, 경제활동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8> 여성결혼이민자의 본국과 한국에서의 직업

(단위: 명, %)

| 구분 | 본국에서의 직업 | | | 한국에서의 직업 | | |
|-------|----------|-------|-------|-----------------|-------|-------|
| | 빈도 | 백분율 | | 빈도 | 백분율 | |
| 경제활동 | 농축산어업 | 241 | 9.6 | 1,675 (66.5) | 277 | 11.0 |
| | 공장근로자 | 425 | 16.9 | | 196 | 7.8 |
| | 가사도우미 | 76 | 3.0 | | 68 | 2.7 |
| | 사무직 | 352 | 14.0 | | 26 | 1.0 |
| | 자영업(장사) | 191 | 7.6 | | 72 | 2.9 |
| | 판매원 | 164 | 6.5 | | 23 | 0.9 |
| | 교사 | 101 | 4.0 | | 81 | 3.2 |
| | 건설, 노무자 | 16 | 0.6 | | 8 | 0.3 |
| | 음식점 종업원 | 109 | 4.3 | | 123 | 4.9 |
| 비경제활동 | 전업주부 | 150 | 5.9 | 730 (33.5) | 1,060 | 42.0 |
| | 학생 | 92 | 3.6 | | 15 | 0.6 |
| | 미취업 | 204 | 8.1 | | 249 | 9.9 |
| | 기타 | 284 | 11.3 | | 160 | 6.3 |
| | 무응답 | 117 | 4.6 | | 164 | 6.5 |
| 합계 | | 2,405 | 100.0 | | 2,358 | 100.0 |

2) 취업희망 여부

한국에서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취업을 원하는지를 알아 보았다. 취업을 원하는 여성은 1,637(64.9%)로 취업을 원하지 않는 여성 630(25.0%)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9> 취업희망 여부

(단위: 명, %)

| 취업 희망 여부 | 빈도 | 백분율 |
|----------|-------|-------|
| 있다 | 1,637 | 64.9 |
| 없다 | 630 | 25.0 |
| 무응답 | 255 | 10.1 |
| 합계 | 2,522 | 100.0 |

2005년 보건복지가족부 조사에 의하면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경제활동에 60%수준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의 경제활동이유는 생계유지목적이 51%, 자녀 교육비 충당이 17%이며, 여성들의 취업직종은 음식점 종업원등 서비스직이 5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처럼 전업주부가 아니라 모두 일을 하는 여

성으로서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일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정선애, 2007: 6).

3) 취업희망직종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취업을 원하는 경우 어떤 직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취업 희망직종은 본국에서의 직업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나, 공장근로자 681(41.1%), 아동교육을 위한 방과 후 교사 267(16.1%)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기타응답으로는 번역 및 통역, 음식점, 간호조무사, 자영업 등을 희망하였다.

결과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인적지원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 여성들의 취업희망직종을 고려하여 직종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취업을 위한 사전교육이 요구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들이 장기간 훈련과 훈련비용이 소요되는 전문직보다는 저숙련 노동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을 희망하기는 하나 특별한 교육이 없어도 바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0> 취업 희망직종

(단위: 명, %)

| 취업희망직종 | 빈도 | 백분율 |
|---------------|-------|-------|
| 가사/육아도우미 | 62 | 3.0 |
| 공장근로자 | 681 | 41.1 |
| 아동교육(방과 후 교사) | 267 | 16.1 |
| 단순보조 | 165 | 10.0 |
| 사무직 | 134 | 8.1 |
| 판매원 | 87 | 5.0 |
| 기타 | 260 | 15.7 |
| 합 계 | 1,656 | 100.0 |

4)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도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에 살펴보았다.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자녀양육문제가 304(41.1%), 과다한 가사노동 88(11.9%), 언어문제 76(10.3%)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응답으로는 임신 중이거나 혹은 지금 일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자녀양육문제가 가장 크지만, 과다한 집안일과 언어의 비유창성도 취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마땅한 일이 없어서라는 이유도 74(10.0%)에 해당함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직종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표 11> 미취업 이유

(단위: 명, %)

| 미취업 이유 | 빈도 | 백분율 |
|-----------|-----|-------|
| 자녀 양육 | 304 | 41.1 |
| 언어 문제 | 76 | 10.3 |
| 가족 반대 | 45 | 6.1 |
| 과다한 가사노동 | 88 | 11.9 |
| 마땅한 일이 없음 | 74 | 10.0 |
| 기타 | 153 | 20.6 |
| 합계 | 740 | 100.0 |

IV. 정책적 제언

1.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추진체계 구축

1)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조례 제정

충청북도에는 2007년 4월에 『충청북도거주외국인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인 가정이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며,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충청북도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외국인 가정”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간에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제2조).

그러나 『충청북도거주외국인지원조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90일 이상 도내에 거주한 자, 내국인 혹은 외국인간에 혼인·입양·혈연관계를 가진 자로 한정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범주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배제되고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적을 취득하였어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이를 위한 조례제정은 복리향상 및 지역사회의 다문화인식을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2) 부서간 협력체계 구축

현재 충청북도 내 결혼이민자 관련 업무는 여성가족과, 자치행정과, 농업정책과 등에

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관련부서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통합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결혼이민자가족 지원부문에 대한 통합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사업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으며,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확보 협조 등을 통해서 연계성 강화를 이루며 정책추진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혼이민자가족 DB구축과 관리체계 정립

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 달리,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이혼, 가출, 이사, 주소 불분명 및 본국귀환과 같은 이유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등의 실태가 나타나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DB 구축과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수립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원, 국적, 자녀, 직업 등 기본적인 인구학적 조사 및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원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영·유아 보육지원, 자녀학습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에 소요되는 예산과 필요한 자원을 산출하는 등, 정책의 수립과 운용에 있어서 효율성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도내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조사 및 자료 축적을 통해 결혼이민자가족 복지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2. 지역사회 조기적응 및 정착지원

1) 한국어 교육

결혼이민자 여성의 경우 언어소통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들의 한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정보접근 기회와 자원으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한국어 습득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도내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어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나 대체로 초급 수준에 머물고 있어 단계별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몇몇 지역의 경우 대부분 자원봉사자에 의존하기 때문에 강사수급의 어려움이 있고 기관별로 교육대상이 중복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어 사용은 결혼 후 조기 정착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결혼 전부터 사전에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언어는 그 나라의 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언어교육과 관련하여 문화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한국어 프로그램은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대학 내의 한국어 강사 양성 프로그램에서 배출된 한국어 강사 및 대학생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접근가능성과 여성들의 생활상황에 따른 시간고려를 통한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전문적 교육, 단계적 교육, 시간대별 교육, 교육 방법의 다각화 등이 요구된다.

2) 지역단위 종합생활정보 제공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새롭고 낯선 곳에 정착해야 하는 두려움과 생활의 다름으로 인한 갈등을 겪을 수가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을 통한 이민자들이 초기 정착과정에서 지역생활에 대한 정보 부족과 의사소통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정보제공과 통역서비스 지원 등이 필요하다.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행복한 한국생활 도우미』,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착지원을 위한 가이드 북』,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모성보호 가이드』, 『여성결혼이민자 한국생활 가이드』, 『외국인생활안내』를 발간 배포하여 여성들의 한국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지역단위에서 결혼이민자가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생활안내책자는 부족한 형편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의료기관·상담기관·교육기관·경찰서·시장·마트 등에 대한 기초적인 생활안내책자를 언어권별로 발간하여 배포할 필요가 있다.

3) 한국문화 이해 교육

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의 문화나 역사, 법률, 제도, 교육체계, 정치, 문화등 한국사회전반과 지역생활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결혼이민자들이 이주초기에 겪을 문화적 갈등이나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한민국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소양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활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한국 법률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결혼이민자 인적자원개발

1) 취업역량강화

결혼이민자들의 높은 취업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취업 연계및 창업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이 훌륭한 인적자원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이 본국에서 하던 일이나 사용하는 언어의 장점을 살려서 국제결혼 이민자 적합 직종의 창출이 요구된다.

노동부에서 고용지원센터 또는 워크넷에 구직 등록한 취업 희망자에게 취업 상담및 취업알선을 하고 있다. 그밖에 농림수산식품부, 교육인적자원부등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들은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고, 취업을 위한 기술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적합 직종 및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야 한다. 특히 결혼이민자들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농촌지역에 적

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양성해야 하며 농촌여성을 위한 영농기술과 지도자교육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지역사회참여 활성화

여성결혼이민자 중에는 고학력 여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들의 전문성을 한국에서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우리나라 여성인력으로 확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 자원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네트워킹을 도모해야한다. 또한 결혼이민자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이 요구된다.

V. 결론

우리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에 대한 논의는 여성들이 살아온 각자의 문화와 경험을 인정하기보다는 한국사회의 조기 적응을 위한 문화이식이라는 동화주의에 입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는 여성으로써, 이민자로써, 아내로써 틀 지워지는 삶속에 규정되어 있고, 주체가 아닌 대상화되고 타자화된 관점에서 정책대상자로 인식됨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 삶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열악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은 이민역사를 반영하여 체계화되어야 하며, 단계, 수준, 욕구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는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은 반면, 직업의식이나 한국어가 수반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맞춤식 교육이 필요하며, 결혼이민자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서비스지원체계가 보건복지가족부를 중심으로 개편되고 자치단체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농촌지역 여성의 경우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2007),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2007-02 정책보고서.
- 강희원.(2006).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 요인과 통합 정책, 「국가정책연구」, 20(2), 5-34.
- 고숙희.(2008). 한국의 다문화사회 진행에 따른 접근방안 모색: 한국인과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의 태도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9(1): 213-234, 서울행정학회
- 권미경.(2006). "다문화사회 의 교육문화 과제 탐색: 여성결혼이민자의 체험에 관한 질적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교육학박사학위논문.

- 김영란.(2006),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의 삶과 사회문화적 적응관련 정책, 「아시아여성연구」, 제45집 1호.
- 김영주.(2007), 「외국의 국제결혼가족 및 거주 외국인 지원 정책 연구- 일본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2007-01 연구보고서.
- 김원섭.(2008), 여성결혼이민자 문제와 한국의 다문화정책 -"다문화가족지원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민족연구」 제36권, 112-135. 한국민족연구원
- 김은실 · 김정선.(2007), "지구/지역 시대 개인들의 행위 전략으로서 국제 결혼: 새로운 아시아/지역으로서의 충남 J마을 사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지구화 시대의 현장 여성주의』.
- 김이선 · 황정미 · 이진영.(2007), 「다민족 ·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파러다임 구축 (1): 한국사회의 수용현실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현민 · 김유미 · 박지현.(2008), 다문화 사회의 정책적 이슈에 대한 고찰, 2008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3).
- 김혜진.(2008), "다문화시대에 따른 가족윤리연구-이주결혼여성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인진.(2008), 효과적인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한국사회학」, 42(2)
- 이용승.(2004), 호주의 다문화주의, 「동아시아 연구」, 8: 177-205.
- 정선애.(2007), 「일하고 싶은 결혼이주여성, 현모양처가 좋은 이주여성정책」, 2007 경기 심포지엄 다문화 '트렌드'시대, 이주여성 정책과 운동, 어디로 갈 것인가.
- 정일선.(2006), 「국제결혼 가족 및 아동 실태조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조경남.(2007), 현대국가와 다문화주의, 「민족연구」, 30: 6-15.
- 최현미.(2007),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과제」,
- 동계청.(2008), 「인구동태통계연보」.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 「다민족 ·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19-01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 「다민족 ·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19-01.
- 한승준.(2008a), 동화주의모델 위기론과 다문화주의 대안론 -프랑스의 선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3), 99-126.
- 한승준.(2008b), 프랑스 동화주의 다문화정책의 위기와 재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42권 제3호, 463-486.
- 함정현 · 황창주 · 소광섭.(2008), 한국의 다문화사회 형성과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 「동방학」 15, 423-451.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